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대통령령 제18875호, 2022. 6.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을 소속기관 출장소의 위치 등에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

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전팀장”을 “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전팀장”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

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
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
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을 “과학기술서기관·농
업연구관 또는”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
보건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
건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
구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
는”을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으
로,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
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
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을 “과학기술서기관·공
업연구관 또는”으로,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을 “과학기

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을 “농업사무관·행정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 및”을 “1명),”으로, “2명”을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2명(농업연구사 1명, 8급)”을 “1명(농업연구사)”로, “임용한다”를 “임용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임용한다”를 “임용하고,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같다”를 “같으며,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국립식량과학원 춘천출장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국립식량과학원 철원출장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4 다음에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신설하고,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를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를 신설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를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를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를 삭제한다.

별표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4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를 삭제한다.

별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4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를 삭제하며,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4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삭제하며,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하고,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 다음에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며,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30”을 각각 “529”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 다음에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과학기

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5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를 삭제하며,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삭제하며,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5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 “14”를 “13”으로 하며,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 다음에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며, 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며, 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7의2 일반직 계 26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한다.

별표 7의3 일반직 계 26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한다.

별표 9의2 2)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3)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9월 30일”을 각각 “2024년 9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5조 관련)

명 칭	위 치
국립식량과학원 춘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국립식량과학원 철원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44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34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 관	4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 관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 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 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 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5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농 업연구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3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	2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	5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 정직 5급상당(비서)	1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
행정주사 · 농업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전산주사	3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 신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8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운전주사보 · 농업연구사 · 농촌지 도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1
사서주사보	1
농업주사보	8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 사	23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비서)	1
운전서기보	3
농업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농업연구사	23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 경연구사	23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8
농촌지도사	25
전기운영주사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4
전문경력관 다군(시청각 담당)	1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45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3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 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 도관	4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 관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 는 농촌지도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5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3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
행정주사 · 농업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농업주사	1
전산주사	3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운전주사보 · 농업연구사 · 농촌 지도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1
사서주사보	1

농업주사보	7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1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비서)	1
운전서기보	3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농업연구관	1
농촌지도관	1
기록연구사	1
농업연구사	23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2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8
농촌지도사	24
전기운영주사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4
전문경력관 다군(시청각 담당)	1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528
일반직 계	5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농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4
행정주사 · 농업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
공업주사	3
농업주사	4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6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0
공업주사보 · 농업연구사	1
공업주사보	7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	9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4
공업서기	13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농업서기	1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1
공업서기보	5
시설서기보	1
운전서기보	8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5
농업연구관	79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7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4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
농업연구사	250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
기계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529
일반직 계	5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농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 · 농업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
공업주사	4
농업주사	4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7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0
공업주사보 · 농업연구사	1
공업주사보	6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	7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4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
공업서기	13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농업서기	1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0
공업서기보	5
시설서기보	1
운전서기보	8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5

농업연구관	80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7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4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
농업연구사	250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
기계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

[별표 5의2]

<u>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530
일반직 계	53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농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 · 농업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
공업주사	4
농업주사	4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7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0
공업주사보 · 농업연구사	1
공업주사보	6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	7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4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
공업서기	14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농업서기	1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0
공업서기보	5
시설서기보	1
운전서기보	8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5
농업연구원	80
농업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5
농업연구원 · 수의연구원 · 보건연구원 · 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	1
농업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수의연구원 · 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27
농업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	4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
농업연구사	250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
기계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344
일반직 계	3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 지도관	3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 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 는 농촌지도관	2
행정주사	6
공업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3
공업주사보	12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4
공업서기	9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
공업서기보	4
운전서기보	9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
농업연구관	73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공업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
농업연구사	160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8
기계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1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345
일반직 계	34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 지도관	3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 는 농촌지도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행정주사	6
공업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	12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3
공업서기	9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
공업서기보	4
운전서기보	9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
농업연구관	75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공업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
농업연구사	159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8
기계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1

[별표 7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26
일반직 계	26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
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1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4
식품위생서기보	1
농업연구사	1
농촌지도사	5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 담당)	6

[별표 7의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26
일반직 계	26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
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1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4
식품위생서기보	1
농업연구사	1
농촌지도사	5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 담당)	6

[별표 9의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0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 농업연구팀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지원과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 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1명 (5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 으로 보한다.	제3조(대변인)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 -----.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지식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 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u>	제6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u>

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
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연구정책국) ① (생 략)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 ·
 연구개발과 · 연구관리과 · 농자
 재산업과 및 첨단농자재육성팀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
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첨단농자재육
 성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
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
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으로 보한다.

③ ~ ⑨ (생 략)

제8조(농촌지원국) ① (생 략)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 ·
 기술보급과 · 농촌자원과 · 재해
 대응과 · 식량산업기술팀 · 청년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
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

제7조(연구정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
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
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
관 · 환경연구관 -----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농촌지원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농업인육성팀 및 농업인안전팀
을 두며, 지도정책과장·기술보
급과장·농촌자원과장 및 재해
대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
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
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
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
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
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청년
농업인육성팀장은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
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
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
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
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
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으로 보한다.

③ ~ ⑪ (생 략)

제9조(기술협력국) ① (생 략)

----- 부이사관·과학기술
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
연구관·환경연구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
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
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
----- 농업사무관·
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
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
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
전팀장-- 농업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
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
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기술협력국) ① (현행과 같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
과 · 국외농업기술과 · 농산업경
영과 및 수출농업지원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
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
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 · 운
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
며, 기획조정과장 · 운영지원과
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
다.

② ~ ④ (생 략)

제12조(농업환경부) ① (생 략)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 ·
기후변화평가과 · 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
양비료과장은 기술서기관 · 농
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
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
업연구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농업환경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

기후변화평가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제13조(농업생물부) ① (생 략)

② 농업생물부에 곤충양잠산업과 · 양봉생태과 및 농업미생물과를 두며, 곤충양잠산업과장은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생태과장 및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생 략)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잔류화학평가과 · 작물보호과 · 독성위해평가과 및 유해생물과를 두며,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업생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유해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제15조(농업공학부) ① (생 략)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 수확후관리공학과 · 안전재해예방공학과 및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을 두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안전재해예방공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업공학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

학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생
략)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유전체과
· 생물소재공학과 · 유전자공학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 및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17조(농식품자원부) ① (생략)

② 농식품자원부에 식생활영양
과·발효가공식품과 및 기능성
식품과를 두되, 식생활영양과장
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현행
과 같음)

(2)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
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식품자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기능성식품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작물육종과·작물재배생리과·작물기초기반과·기술지원과·간척지농업연구팀 및 밀연구팀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작물육종과장·작물재배생리과장·작물기초기반과장 및 밀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

관·보건연구관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 ---

관으로 보한다.

② ~ ⑨ (생 략)

제21조(중부작물부) ① (생 략)

② 중부작물부에 중부작물과 · 수확후이용과 및 재배환경과를 두되, 중부작물과장 및 수확후 이용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배환경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지원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중부작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② -----

----- 농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
한다.

③ · ④ (생 략)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
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
8조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
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
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
급 1명) 및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다.

행정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 10퍼센트---

-----.

② -----

-- 1명), -----
-----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

---.

③ (생 략)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2명(농업 연구사 1명, 8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후단 신설>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으며, 별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10퍼센트-----

----- 1명(농업 연구사 -----
----- 임용하고.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10
퍼센트-----

표 7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과 같다.

④ ~ ⑥ (생략)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및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을 말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임용
하고,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 -----

----- 10퍼센트 -----

같으며,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장·생물소재공학과장, 국립식
량과학원 재배환경과장 및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
라 증원된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 1
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
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
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1명(공업
서기 1명)은 2023년 8월 31일까
지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